

해외 경쟁정책 동향

본 협회 조사부

미국

법무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동의명령준수 권고조치

법무부는 금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동의명령안의 조건하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버소프트웨어로서 제공하고자 하는 라이센스에 관한 동의명령준수 권고를 내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법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동의명령안의 일정 조항에 구속되는 것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2002년 8월 6일에 라이센스 제공을 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무부는 2002년 2월 27일 마이크로소프트, 합중국 및 화해를 한 9개 주 사이에 합의된 동의명령안의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한 실행에 대한 감시의 일환으로서 권고를 행했다. 그 목적은 준수의 중요한 진전내용을 공공에게 알도록 하고 그에 의해 컴퓨터 산업에 대한 법무부로서의 적절한 공헌을 촉진하는 것에 있다.

법무부는 라이센스에 대해서 사전승인은 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이 동의명

령안의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중하고도 전면적인 검토를 행하고 있다. 본 권고에서 「법무부는 라이센스가 최종판결안과 모순되지 않는 방법으로 관련기술에 의한 합리적이고도 비차별적 진입을 확실히 약속케」하고 또한 「법무부는 산업으로부터의 공헌에 의해 이익을 얻는다」고 하고 있다.

본 건은 최근의 동의명령준수권고이나 법무부는 적절한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추가적 권고를 행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한, 금일 법원에 권고 통지를 제출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동의명령준수 권고 - 2002년 8월 5일

마이크로소프트, 합중국 및 화해를 한 원고인 9개 주에 의해 합의된 최종판결안(2002년 2월 27일에 수정되어 법원에 제출된)의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한 실행 감시의 일환으로서 합중국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하여 동의명령준수 권고를 정기적으로 행할 수 있다. 본 건은 초기의 권고이다.

2001. 11. 6. 법원에 제출된 소송

상의 합의에 의해 마이크로소프트는 법무부에 의한 판결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최종판결안의 조건을 준수하는 것에 합의했다. 최종판결안의 section III. E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버 OS가 윈도우즈 OS와 호환하기 위해 이용되는 일정 기술을 합리적이고도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제3자가 이용하는 것을 가능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 section III. E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는 늦어도 2002. 8. 6까지 이 기술을 라이센스로서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법무부에 대해 8월 6일에 라이센스 제공을 개시하고, 장래 라이센스와 조건을 협의하는 프로세스를 개시하는 것 및 라이센스에 관한 정보에 있어서는 8월 6일 마이크로소프트 웹사이트상에서 입수 가능하다고 통지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주 법무부 및 화해했던 주의 대장들에 대해 동사가 제공하려고 하는 라이센스 원안을 제공했다. 라이센스는 복잡하고도 최신의 것이고, 포괄적인 분석을 요한다. 법무부는 라이센스가 최종판결안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라이센스의 조건을 신중하고도 세밀히 검토, 평가하는 작업을 행하고 있

는 중이다.

법무부는 라이센스가 최종판결안의 조건에 모순되지 않는 방법으로 관련 기술로의 합리적이고도 비차별적인 진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확실히 가져온다는 점을 강력히 약속하고 있다. 라이센스 검토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산업으로부터의 공현에 따른 이익을 얻게 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라이센스에 의한 영향을 받으려는 제3자로부터 의견을 들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다른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공현도 환영하고 있다.

2002. 8. 5. 미법무부 발표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의 내과의 단체, 화해에 동의

FTC, 내과의료서비스 요금제한에 대한 신고

System Health Providers(SHP) 및 그 친회사로 약 1,250명의 회원 대부분이 달라스 포트워스 도시권 동부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내과의인 Genesis Physicians Group, Inc.(GPG)는 양자가 달라스 지역에서 내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경쟁을 방해하였다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주장에 화해하는데 합의했다. FTC에 따르면 관계인들은 부당하게 요금 등 GPG 회원간의 경쟁수단을 제한하고, 건강보험회사, 경영자, 개개의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화해안은 위법한 공동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명령안을 포함한 것이다.

FTC의 주장에 따르면 관계인들은 다

음과 같이 FTC법 제5조에 위반했다 :

- 요금 등 경쟁상 중요한 조건에 관해 GPG 회원간의 협정을 조장하고, 실행한 점
- 건강보험회사 및 다른 제3자 지불주체(합쳐서 「지불주체」라 한다)에 대해서 공동으로 합의했던 조건 이외의 거래를 거절한 점
- 지불주체와의 계약에 있어서 모두 하나의 요금 등 경쟁상 중요한 조건에 대해 교섭한 점
- 관계인 SHP의 표준계약에 합치하지 않는 지불주체의 의사표시를 GPG 회원에 전달하는 것을 거절한 점

「FTC는 Health Care산업의 사업자에 의해 요금의 결정, 그 밖의 반경쟁적 행위를 배제할 것을 약속했다. 본 건의 화해는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다.」라고 FTC 경쟁국 Joe Simons 국장은 언급했다.

FTC의 주장

FTC에 따르면 내과의는 대부분의 경우 요금을 포함한 조건을 정하기 위해 지불주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내과의는 동 조건아래 지불주체의 가입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그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내과의는 이따금 지불주체를 통해서 추가적인 환자의 확보를 차지하기 위해 보상(룰)을 낮게 하는 점에 동의했다. 내과의간의 협정이 없으면 경합하는 내과의는 지불주체와의 계약을 체결할지, 어느 정도의 요금으로 체결할지에 대해 개개인이 결정하게 된다.

FTC의 주장에 의하면 달라스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지불

주체는 달라스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다수의 Primary Care의 내과의와 기타 다른 내과의에 대해 환자 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달라스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다수의 내과의가 GPG의 회원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다수의 지불주체는 특히 GPG의 회원이 집중하는 지역에서는 내과의의 네트워크에 다수의 GPG회원의 내과의를 포함하지 않는 한 존속 가능한 내과의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내과의 단체는 내과의로부터 개별적으로 얻은 내과의가 승낙한 요금 등 기타 중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정보를 지불주체에 전달하기 위해 대리인을 이용한다. 대리인은 모든 지불주체의 계약 제의를 내과의에게 전달하고 내과의는 개별적으로 승낙할지 거부할지를 결정한다. 이와 같은 「메신저 모델」 협정은 1996년에 FTC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결정한 「헬스케어에 관한 독점금지 집행에 관한 Statement」에서 기술되어 있으며, 요금 또는 요금에 관련한 조건에 관해 경합하는 내과의간의 협정을 조장하지 않고 내과의와 지불주체와의 계약체결을 쉽게 하고 관련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FTC의 주장에 의하면 SHP는 단지 「메신저」로서 활동한다고 하기보다도 GPG 회원의 공동의 대리로서 이따금 다른 것과 구별된 요금표에 의해 제안하거나 반대로 제안하는 등 계약에 있어서 지불주체와 적극적으로 교섭하고 있었다.

또한 SHP는 그 교섭력을 유지하기 위해 GPG 회원이 지불주체와 개별적

으로 계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더욱이 SHP는 GPG의 회원에 대해 그들이 SHP를 통해서 공동으로 지불주체와 교섭한다면 교섭에 있어서 우월성이 높아지고 또한 지불주체는 「시장수준에 맞지 않으며」 혹은 부당한 요금외 계약조건을 제의하고 있다고 충고했다.

PGP의 다수의 회원은 SHP를 통해서 교섭하는 이외에는 자발적으로 지불주체와 교섭하지 않고 SHP에 의해 공동요구에 저항하려고 하는 지불주체에게는 그 취지를 전했다.

FTC의 주장에 의하면 SHP는 GPG의 회원에게 SHP로부터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요금을 가져오는 지불주체의 제의를 전달하지 않고, 메신저 모델과 모순하는 행위를 해왔다. 그 대신 SHP는 보다 바람직한 요금 등 기타 계약조건 즉, 지불주체와(공동의 교섭이 아닌) 각각의 교섭을 행한 GPG 회원에게는 제의될 수 없는 계약조건을 요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그 조건을 성사시켰다. 지불주체가 SHP로부터 승낙 가능한 요금 등 기타 계약조건을 승낙한 경우로 봐서 SHP는 GPG 회원에게 지불주체의 계약안을 검토하도록 전달했다.

FTC의 주장에 의하면 SHP는 GPG 회원에게 직접지불주체와 계약시키지 않은 것에 의해, 또한 계약이 SHP에 의해 승낙 가능한 것이 아닌 한 GPG 회원에게 지불주체의 계약안을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아마도 SHP와 조건에서 타협하지 않는 한 지불주체가 달라스 지역에 있어서 경쟁적인 내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능력을 제한함과

더불어 그 같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비용이 높은 것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지불주체는 SHP의 요구에 굽복하고 전체 GPG 회원에게 경쟁으로부터 벗어난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1999년 7월 이후, GPG 및 그 회원과 SHP는 자기들의 금융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도록 서비스에 대한 요금의 통제를 행했다. 더욱이 GPG 회원은 중요한 잠재적 효율성을 창출하기 위해 사업의 통합을 행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관계인들에 의한 요금 등 경쟁상 중요한 조건에 대한 공동교섭은 효율성을 강화하는 어떠한 통합과도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

동의명령안

동의명령안은 관계인들 및 그 회원인 내과의가 합리적인 공동행위를 행하는 것을 용인하는 한편, 위법한 공동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화해안에 의해 관계인 SHP 및 GPG는 다음을 목적으로 하는 내과의 간의 협정을 체결하는 것 또는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게 된다.

- ① 내과의 이름으로 지불주체와 교섭하는 것
- ② 지불주체와 거래하고 지불주체와의 거래를 거절하고, 또는 지불주체와의 거래를 거절토록 협박하는 것
- ③ 서비스 제공자가 지불주체와 거래하는 조건 또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생각케 되는 조건에 관여하는 것
- ④ 개별적으로 또는 SHP 혹은 GPG 이외의 협정을 통해서는 지

불주체와 거래시키지 말것

이에 더하여 동의명령안에 따라 관계인 SHP 및 GPG는 내과의가 지불주체와 거래할 의사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거래코자 생각하는 조건(가격조건을 포함)에 관한 내과의간의 정보를 교섭하는 것 또는 교섭을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게 된다.

화해안은 관계인 SHP 및 GPG가 「적격한 리스크 분담에 관한 공동결의」 또는 「적격한 진료통합에 관한 공동결의」의 책정 및 운영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단, 그 결의가 참가한 내과의가 개별적으로 혹은 별도의 결의를 통해서 지불주체와 거래하는 능력을 제한한다거나, 거래거절을 조장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적격한 리스크 분담에 관한 공동결의」가 되기 위해서는 2개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참가하는 전체 내과의가 결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금융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로써 참가자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의 관리에 의한 비용관리와 질의 개선을 공동으로 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

「적격한 진료통합에 관한 공동결의」이기 위해서는 같은 2개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로, 전체 참가자는 비용을 관리하고 공급시키는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해 내과의간에 있어서 고도의 상호의존 및 협력을 창출하고, 진료행위의 모형을 평가하고 수정하기 위한 활동적 및 계속적인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로, 상환 및 기타 거래조건에 관한 협정은 공동의 결의를 통해서 중요한 효

율성을 얻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필요 한 것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대한 정의는 1996년의 헬스케어에 관한 독점금지정책에 관한 FTC와 법무부의 공동성명에 대한 분석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동의명령에 의해, SHP는 GPG 회원, 지금까지 계약을 한 지불주체, 그 외 특정의 사람에게 FTC의 주장과 명령을 배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지불주체로부터 요구가 있으면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고, 공모를 행했던 시기 에 체결된 지불주체와의 계약을 중단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관계인에 의한 공모의 가격설정의 효과를 제거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화해안은 그 조건으로의 준수가 FTC에 의한 감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의 기록 및 보고 요구를 포함하고 있다.

FTC가 본 건 동의명령안을 심의한 결과, 5-0으로 의결되었다. 동의명령 안에 관한 발표는 곧 연방관보에 의해 공표 될 것이다. 협정에 있어서는 FTC 가 그것을 최종판으로 할지 여부의 판단을 한 후, 30일간 2002년 9월 19 일을 기 한 으로 하는 Public Comment 절차에 회부하게 된다.

2002. 8. 20. FTC 발표

James 국장은 연방법무부의 보배로 평가되었다”고 검찰총장은 말하면서, “그는 강한 통합력과 공정성을 지닌 인물이며, 소비자와 경쟁을 위해 지칠줄 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일해 왔다. 나는 그가 오랜 기간 국가와 법무부를 위해 봉사한 것에 감사한다”고 했다.

지난 2001년 6월 14일에 연방상원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임명된 Charles James 국장은 앞으로 Chevron Texaco사의 부사장 겸 고문으로 활동 할 예정이며, 그의 확실한 임무는 올 해 말에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강하고 독자적인 리더쉽을 가지고 법무부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큰 영광이었다”고 James 국장은 말하면서, “Aschcroft 검찰총장이 나에게 그러한 기회를 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며, 앞으로 개인적 능력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James 국장은 연방법무부 독점금지국장으로서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적인 자유와 기회가 보호되도록 독점금지법의 집행을 관할 해 왔다. 독점금지국은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에 대해 기소를 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산업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소모되지 않도록 하며, 소비자의 이익이 추구되도록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2. 10. 3. 연방법무부

지 및 상업위원회의 하부 조직인 보건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제약산업에서의 경쟁의 유지, 소비자 비용의 절감을 위해 Hatch-Waxman 개정법을 변경할 것과 연방 거래위원회 연방법무부 그리고 사업자 들 사이의 합의안들을 입법화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한 Hatch-Waxman 개정법 하에서의 의약업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법집 행 현황도 검토하고 있다.

여기서는 먼저 소매시장에서의 처방 약의 소비 추세에 관한 미국 의약품 산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른 의료 서비스에 비해서 폭넓은 마진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언급하면서, 이는 개인 소비자뿐만 아니라 정부, 건강관련 사보험 및 고용주들과도 이해관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음식, 의약품 및 화장품법에 대한 개정안인 Hatch-Waxman법은 의약품의 소비와 약품개발로 인한 이윤을 증대시켰다. 특히 이 법은 약품 연구개발 회사들의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위한 인센티브와 의약품(generic drug) 제조업자에 의한 시장진입 기회 사이에서 조화를 추구하는 규제의 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법으로 인한 문제점도 있다고 보고서에서는 언급하고 있다. 즉 많은 제약업자들이 성실하게 활동하고 있기는 하지만, 반면에 이러한 규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없이 자신들만 보다 큰 이윤을 획득하려는 업자들이 있는 것이다. 그밖에도 제약업 분야에서는 특히와 관련한 위반 사례들도 문제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대해 연방 거래위원회는 “반경쟁적 행위로부터

연방법무부 Charles James 독점 금지국장 사임

John Ashcroft 검찰총장은 지난 10월 3일 Charles A. James 독점 금지국장이 개인적인 이유로 국장직을 사임했다고 발표했다. “Charles

연방거래위원회, 미국 제약업 시장에서의 경쟁상황 발표

연방거래위원회는 연방의회의 에너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2002. 10. 9. 연방거래위원회

연방거래위원회, 유람선 사업자들의 합병조사 종결

유람선 여행사업자인 Royal Caribbean Cruise, Ltd.사와 P&O Princess Cruise plc사는 우호적인 합병을 하였고, Carnival Corporation사는 이 Princess사를 적대적 합병을 한 사건에서, 연방거래위원회는 3대2의 결정으로 유람선 사업자들간의 2건의 합병을 허용하면서 10개월간의 조사를 종결했다. 연방거래위원회의 이번 결정에는 유럽연합과 영국 등 관련 경쟁당국들의 의견도 반영되었다.

이번 사건은 두 차례에 걸친 합병행위로 인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으며, 그 최종 결정은 당해 사업분야에서의 특수한 사정들이 고려되었다. 위원회도 이번 사건의 복잡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방대한 양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행위자들에 대한 인터뷰와 제3자들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번 사건은 요금, 예약상황, 유람선의 배치상황 및 유람선 업계의 재정적 특성 등에 관한 많은 자료들을 경험적으로 분석해야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게는 부담이 되었다.

이번 사건에서 합병을 허용한 다수의 의견은 “이번 조사는 합병에 관한 위원회의 검토는 관련 산업을 동태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구체적 사실관계가 가져오는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는 예가 되었다. 광범위한 조사 끝에 우리는 유럽연합 등 다른 경쟁당국과

마찬가지로 위원회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나 Sheila F. Anthony와 Mozelle W. Thompson 위원은 이러한 다수 의견에 반대하면서, “우리는 이번 합병이 클레이튼법과 셔먼법을 위반하여 경쟁을 중대하게 감소시킬 것이라고 판단하여 다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합병으로 북미 유람선 여행시장에서 시장력 집중이 나타날 것이고 이는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것이며, 특히 요금과 승선정원 면에서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2. 10. 4. 연방거래위원회

리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발송했다. 당사자들은 11월초까지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다.

연방카르텔청은 2001년 10월에 수개의 회사들과 단체들을 조사한 바 있다. 그리고 이미 2002년 7월에는 여러 단체들과 회사들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보이코트의 혐의가 존재함을 통보한 바 있다. 회사들 및 단체들이 이러한 비판을 면치 못하는 경우 이들은 경쟁제한방지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되어, 최고 50만 유로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2002. 10. 9. 연방카르텔청

경쟁전문가들, 에너지산업의 감독에 대해 논의

독일

연방카르텔청, Landbell사에 대한 보이코트 확인

연방카르텔청장은 Der Grüne Punkt-Duales System Deutschland 주식회사(이하 DSD)와 독일폐기물처리연합회(이하 BDE)가 해센주에서 폐기물 재생시스템을 건립하려는 Landbell사에 대하여 보이코트를 했다는 협의를 조사하여 증거를 포착했다. 또한 해센주에서 DSD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폐기물처리회사도 다른 재생시스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를 했다. 연방카르텔청은 지난 9월 3일에 이 회사의 대표자와 DSD와 BDE의 대표자 및 두 개의 폐기물 처

경쟁법·정책 전문가들이 도관과 같은 망(네트워크)을 이용하는 에너지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경쟁문제를 연구하는 대학교수들의 모임인 경쟁법 작업반은 올해의 주제를 이같이 정하고 지난 10월 7일 연방카르텔청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논의의 주제는 에너지경제법의 개정에 있어서, 에너지제공사업자들이 협의회의 합의를 준수하는 경우에 “그 업종의 선량한 관례”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법자의 고려에서 정해졌다. 전문가들은 사업자단체의 합의가 법적 및 질서정책적 관점에서 이른바 법률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인식했다. 사업자단체의 합의에 대한 법률화는 맘을 이용하는 에너지경제 분야에서 유효경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집행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연방카르텔청장은 이에 관하여 과거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에너지경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망의 분리와 운영에 관한 법적 한계와 의미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참가자들은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가능한 한 지속적으로 망의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연방카르텔청은 이 회의에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경쟁상황을 자세하게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에는 어느 감독기관이 규제감독을 하고 있는지는 그 주요성이 감소하고, 오히려 독립성과 인적·물적 능력을 충분히 갖춘 법적 수단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한다. 독일 경쟁제한방지법은 카르텔청으로 하여금 효과적인 경쟁을 위한 감독을 가능케 해주고 있다. 카르텔청은 비교시장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 검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경우에 시장지배지위의 남용으로써 망 이용료를 책정했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

최근의 입법과정에서 즉시 이행의 법률상 명문화의 도입이 무산된 것과 관련하여, 연방카르텔청장은 “우리 규정들의 효율성은 법률에 즉시 이행제도를 명문화하여 카르텔청에게 권한을 부여했다면 망을 이용하는 에너지 분야에서 경쟁법 규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2002. 10. 8. 연방카르텔청

공정거래위원회, 식육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식육공정거래협의회(회장 후쿠오카 이사오)가 ‘식육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일부 변경하여 승인 신청을 한 것에 대해, 경품표시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므로 동 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를 승인하고 10월 9일자 관보에 고시했다. 아울러 ‘식육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시행규칙’의 일부 변경도 승인했다. 이번 규약 변경은 식육업계 전체에서 표시의 적정화를 추진하기 위해 실시되었고, 그 시행규칙의 변경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 공정경쟁규약은 경품표시법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업계에서 자주적으로 정하는 규범이다. 경품표시법 제10조제2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함으로써 공정경쟁을 확보하기에 적절할 것, ② 일반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 ③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을 것, ④ 공정경쟁규약에 참가하거나 탈퇴할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을 것

규약의 주요 변경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규약대상자를 모든 식육판매업자에게 확대하는 것이다. 규약의 적용대상자를 소매판매업자로부터 모든 판매업자에게로 확대하여 식육도매업자 등도 규약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규약 제2조 내지 제12

조). 둘째로 소매판매업자 이외의 판매업자들의 필요표시사항을 규정했다. 소매판매업자 이외의 판매업자에 대해 소매판매업자와 동일하게 준수해야 할 필요표시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부당표시의 금지규정을 제정했다(규약 제9조 내지 제10조). 셋째로 규약적용대상자의 장표류(帳票類)를 정비했다. 전국식육공정거래협의회 등에 의한 표시의 조사·감시에 이바지하기 위해 판매업자에 대해 장표류의 정비·보관을 의무화했다(규약 제8조 내지 제11조). 네 번째는 위반행위 조사의 위촉이다. 전국식육공정거래협의회 및 지방식육공정거래협의회 이외의 자가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였다(규약 제14조제2항).

이번 규약 변경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2일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소비자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변경된 규약은 10월 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한편 전국식육공정거래협의회는 1995년 11월에 설립된 단체이며, 회원 점포 수는 지난 3월 말 현재 20,984개에 이른다. 지난 1970년 경에서 식육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 제정된 이래, 41개 도도부현 등에서 차례로 제정되었다. 그러던 중 이 규약들을 정리하여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경쟁규약을 마련하였다. 이 규약의 일원화와 아울러 각 도도부현 식육공정거래협의회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식육공정거래협의회가 설립되었다.

개정된 식육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공정경쟁규약(이하 「규약」이라 함)은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식육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일반소비자의 적정한 상품선택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식육판매업에 있어서의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규약에서 식육이란 식용에 제공되는 수조(獸鳥)(바다짐승은 제외한다)의 날고기(뼈 및 장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이 규약에서 판매업자란 식육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3. 이 규약에서 소비판매업자란 판매업자 가운데 일반 소비자에 대해서 식육을 판매하는 자(자신의 이름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일반소비자에 대해서 식육을 판매하는 것을 다른 사업자에게 허가한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장 소매판매업자

(소매판매업자에 있어서의 필요표시사항)

제3조 소매판매업자는 사전에 포장되어 있지 않은 식육에 대해서는 매장에 진열된 식육마다 식육의 표시에 대한 공정경쟁규약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에서 정하는 대로 표시카드를 이용하여 다음의 사

항을 외부에서 보기 쉽게 국문으로 명료하게 표시해야 한다.

(1) 식육의 종류 및 부위, 용도 등 시행규칙이 정하는 사항

(2) 원산지

(3) 중량(포장재료 및 붙어있는 기름을 제외한 중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판매가격(중량을 100그램으로 표시해 100그램당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것만으로 적당하지 않은 경우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4) 냉동에 관한 사항 중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

2. 소매판매업자는 사전 포장된 식육에 대해서는 그 포장에 다음의 사항을 외부에서 보기 쉽게 국문으로 명료하게 표시해야 한다.

(1) 전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서 정하는 사항

(2) 중량(그램으로 표시한다), 판매가격 및 100그램당 가격(다만, 100그램당 가격은 포장에 표시하는 것에 대신하여 상품과 동일한 시야에 들어오는 장소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표시카드에 의해 표시할 수 있다)

(3) 소비기한 및 보존방법

다만, 품질보관 유통기간(또는 유효기한)의 표시가 적절한 경우에는 소비기한으로 대신해 품질보존유지기한(또는 유효기한) 및 보존방법을 표시한다.

(4) 가공(포장을 말한다)한 곳의 소재지 및 가공자의 이름 또는 명칭

3. 소매판매업자는 전단지나 광고지

이외에 이와 유사한 것에 의해 광고를 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판매가격 등에 관한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100그램당 단가를 별기하도록 한다.

4. 소매판매업자는 종류가 다른 식육을 사전에 혼합한 다진 고기에 대해서는 혼합비율이 많은 순서에 따라 해당 식육의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소매판매업자에 있어서 부당표시의 금지)

제4조 소매판매업자는 표시카드, 간판, 광고지 그 외의 표시매체 또는 상품의 진열에 있어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식육 이외의 것에 대해 식육인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2) 식육의 종류, 부위, 용도 등에 대해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3) 식육에 대해 외국산이 국산 또는 다른 외국산인 것처럼, 또는 국산이 외국산인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4)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품종 이외의 쇠고기를 '일본소'의 고기라고 표시하는 것, 또는 그렇게 인할 우려가 있도록 하는 표시

(5)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품종 이외의 돼지고기를 '흑돈(黑豚)'이라고 표시하는 것, 또는 그렇게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하는 표시

(6) 외부에서 보이는 장소에 내부의 것보다 품질이 현저히 우량한

상품을 진열하여 진열되어 있는
식육 전부의 품질이 현저히 우
량한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
는 표시

(7) 식육의 품질, 규격, 그 외의 내
용에 대해, 실제의 것 또는 다른
판매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8) 가격 이외의 거래조건에 대해
실제의 것 또는 다른 판매업자
의 것보다 현저히 유리한 것으
로 소비자에게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9) 다른 판매업자 또는 그가 판매
하는 식육을 중상하거나 비방하
는 표시

(10) 사전 포장된 식육에 대해 내용
물의 보호 또는 품질 보존의 한
도를 넘어 과대한 포장 또는 과
잉 포장을 하는 것

(11) 기타 식육의 내용 또는 거래조
건에 대해 일반소비자에게 오인
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가격인하 판매의 표시기준)

제5조 소매판매업자는 식육에 대해 자
신의 점포에서 통상 판매하고 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의 판매, 타
임서비스의 판매, 일괄할인 판매 또
는 중량가격인하판매에 한정해서 가
격인하판매 취지를 표시할 수 있다.

2. 판매가격을 다른 가격과 대조·비
교하는 이중가격표시를 하는 것은
일반소비자가 해당 식육의 동일성
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이며,
자신의 통상 가격에서의 인하, 타임
서비스, 일괄할인, 중량가격인하의

경우에 한한다.

3. 전2항의 표시는 시행규칙으로 정하
는 기준에 의해 표시한다.

(식육의 적정한 관리)

제6조 소매판매업자는 종류가 다른 식
육이 섞이는 것에 의한 부당한 표시
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행규
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
치를 취해야 한다.

(중량)

제7조 소매판매업자는 정확하게 계량
한 중량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소매판매업자에 있어서 장표류의 정
비)

제8조 소매판매업자는 식육의 납품서
등의 장표류를 정비하여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소매판매업자 이외의 판매업자

(소매판매업자 이외의 판매업자에 있
어서의 필요표시사항)

제9조 소매판매업자 이외의 판매업자
는 용기에 넣어, 또는 포장된 식육에
대해서는 그 용기나 포장에 시행규
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외부에서 보기 쉽게 국문으로 명료
하게 표시해야 한다.

(1) 식육의 종류 및 부위

(2) 원산지

(3) 내용량

(4) 냉동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규칙
이 정하는 것

(5) 품질보관 유지기간(또는 유효기
간) 및 보존방법, 다만 소비기한

의 표시가 적절한 경우에는 품
질보관 유지기한(또는 유효기
간)으로 대신해 소비기한으로
대신해 소비기한을 표시한다.

(6) 소매판매업자 이외의 판매업자
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2. 소매판매업자 이외의 판매업자는
용기에 넣지 않거나 포장되어 있지
않은 식육에 대해서는 운송장 또는
납품서에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명료하게 표시해야 한다.

3. 소매판매업자 이외의 판매업자가
사전 포장된 식육에 일반 소비자에
대한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전2항
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매판매업자'는 '소매판매업자
이외의 판매업자'로 한다.

(소매판매업자 이외의 자에 있어서 부
당표시의 금지)

제10조 소매판매업자 이외의 판매업
자는 용기, 포장, 운송장 또는 납품
서에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표시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육 이외의 것에 대해 식육인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
시

(2) 식육의 종류, 부위, 용도 등에
대해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3) 식육에 대해 외국산이 국산 또
는 다른 외국산인 것처럼, 또는
국산이 외국산인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4)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품종 이외
의 쇠고기를 '일본소'의 고기라
고 표시하는 것, 또는 그렇게 오

- 인할 우려가 있도록 하는 표시
- (5)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품종 이외의 돼지고기를 ‘흑돈(黑豚)’이라고 표시하는 것, 또는 그렇게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하는 표시
- (6) 식육의 품질, 규격, 그 외의 내용에 대해, 실제의 것 또는 다른 판매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 (7) 가격 이외의 거래조건에 대해 실제의 것 또는 다른 판매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유리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 (8) 다른 판매업자 또는 그가 판매하는 식육을 중상하거나 비방하는 표시
- (9) 사전 포장된 식육에 대해 내용물의 보호 또는 품질 보존의 한도를 넘어 과대한 포장 또는 과잉 포장을 하는 것
- (10) 기타 식육의 내용 또는 거래조건에 대해 일반 소비자에게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소매판매업자 이외의 판매업자에 있어서 장표류의 정비)

제11조 소매판매업자 이외의 판매업자는 식육의 운송장, 납품서 등의 장표류를 정비하여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공정거래협의회

(공정거래협의회의 설치)

제12조 이 규약을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각 도도부현 식육공정거래협의회(이하 「공정거래협의회」라 한다) 및 전국 식육공정거래협의회(이하 「전국공정거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공정거래협의회는 이 규약에 참가하는 판매업자 및 사업자단체로 구성한다.
3. 전국공정거래협의회는 공정거래협의회, 판매업자 및 사업자단체로 구성한다.
4. 공정거래협의회는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 (1) 이 규약을 철저히 주지시키는 일
 - (2) 이 규약에 대한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일
 - (3) 적정표시 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의 교부에 관한 일
 - (4) 이 규약의 준수사항의 조사에 관한 일
 - (5) 이 규약에 위반하는 혐의가 있는 사실의 조사에 관한 일
 - (6) 이 규약에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조치에 관한 일
 - (7)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기타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의 보급 및 위반의 방지에 관한 일
 - (8) 일반소비자들의 불평 처리에 관한 일
 - (9) 관계 관청과의 연락에 관한 일
 - (10) 그 이외 이 규약의 시행에 관한 일
5. 전국공정거래협의회는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전향의 공정거래협의회의 사항에 관한 일 및 그 지도, 조언 및 협력

- (2)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인정 및 승인의 신청 및 신고에 관한 일
- (3) 그 이외 이 규약의 시행에 관한 일

(적정표시 스티커)

- 제13조 공정거래협의회는 이 규약에 따라 적정한 표시를 하고 있는 소매판매업자에 대해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스티커를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2. 스티커의 유효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위반에 대한 조사)

- 제14조 공정거래협의회 또는 전국공정거래협의회는 제3조 내지 제11조 까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정을 청취해 관계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고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요구하고 그외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공정거래협의회 또는 전국공정거래협의회는 전향에 규정하는 조사를 적절히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해당 조사의 실시를 위촉할 수 있다. 조사의 위촉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 사람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정거래협의회 또는 전국공정거래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판매업자는 전2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조사에 협력해야 한다.
4. 공정거래협의회 또는 전국공정거래협의회는 전향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사에 협력하지 않는 판매업자에 대해 조사에 협력해야 할 취지를 문서를 가지고 경고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스티커의 첨부를 금지하며 5만 엔 이하의 위약금을 부과 또는 제명 처분할 수 있다.

(위반에 관한 조치)

제15조 공정거래협의회 또는 전국공

정거래협의회는 제3조 내지 제11조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실시한 판매업자에 대해 그 위반행위의 배제에 필요한 조치, 그 위반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 기타 이와 관련한 사항을 실행해야 할 취지를 문서로써 경고할 수 있다.

2. 공정거래협의회 또는 전국공정거래 협의회는 전항의 위반행위를 행한 소매판매업자에 대해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스티커를 재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3. 공정거래협의회 또는 전국공정거래 협의회는 제1항의 경고를 받은 판매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판매업자에게 50만 엔 이하의 위약금 부과, 제명처분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구할 수 있다.

4. 공정거래협의회 또는 전국공정거래 협의회는 전조 제4항 또는 본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경고를 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스티커의 부착을 금지 또는 회수하거나, 제명 처분했을 때는 자체 없이 문서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에 대한 결정)

제16조 공정거래협의회 또는 전국공

정거래협의회는 제14조제4항 또는 전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경고를 제외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조치의 안(이하 「결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해 이를 해당 판매업자에게 송부한다.

2. 전항의 판매업자는 결정안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정거래협의회 또는 전국공정거래협의회에 대해서 문서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공정거래협의회 또는 전국공정거래 협의회는 전항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해당 판매업자에게 추가 주장 및 입증의 기회를 주고, 이러한 자료에 근거하여 더욱 심리하여 조치를 취한다.
4. 공정거래협의회 또는 전국공정거래 협의회는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신속하게 결정안의 내용과 동 취지의 결정을 행하여야 한다.

년 10월 9일)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약의 시행전에 있어 소매판매업자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2002. 10. 8. 공정거래위원회

(시행규칙 등의 제정)

제17조 공정거래협의회 또는 전국공정거래협의회는 이 규약의 시행과 관련하여, 시행규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의회 규칙 및 세칙을 정할 수 있다.

2. 전항의 시행규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의회 규칙 및 세칙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이 규약의 변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정의 고시가 있었던 날(2002